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접수일자 및 제출일자 : 2001. 6. 29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0. 7. 09

다. 상 정 일 자 :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7.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용태 총무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세입·세출 총괄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 세입예산액 118,196,856,000원이며, 수납액 130,270,697,407원

- 세출예산현액 129,586,511,940원(전년도 이월사업비 11,389,655,940원을 포함)으로
지출액은 105,762,001,820원

- 그 차인 잔액은 24,508,695,587원(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 명시이월 3,724,758,760원이며, 사고이월은 876,640,730원

계속비이월은 5,382,968,470원, 보조금(국·시비) 집행잔액은 659,613,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64,714,627원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	장수결장액 (C)	수납액 (D)	미수납액처리			장수 율 (D/C)	
						계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총 계	118,196,856	11,389,656	129,586,512	148,196,371	130,270,697	17,925,673	1,111,436	16,814,237	87.9	
소 계	93,028,239	11,271,856	104,300,095	117,903,740	104,430,202	13,473,537	1,081,736	12,391,801	88.6	
일 반 회 계	지방세	20,498,606		20,498,606	24,210,180	21,049,823	3,160,357	833,133	2,327,224	86.9
	보통세	17,341,000		17,341,000	18,902,497	17,666,116	1,246,382		1,246,382	93.4
	목적세	2,976,606		2,976,606	3,005,043	2,966,766	38,276		38,276	98.7
	과년도수입	181,000		181,000	2,302,640	426,941	1,875,699	833,133	1,042,566	18.5
	세외수입	17,768,807	11,271,856	29,040,663	39,652,864	29,339,683	10,313,180	248,603	10,064,577	74.0
	경상적 세외수입	10,260,119		10,260,119	10,256,249	10,202,453	53,795		53,795	99.5
	임시적 세외수입	7,508,688	11,271,856	18,780,544	29,396,615	19,137,230	10,259,385	248,603	10,010,782	65.1
	지방교부세	1,634,000		1,634,000	1,634,000	1,634,000				100
	조정교부금	16,596,831		16,596,831	16,596,831	16,596,831				100
	보조금	35,529,995		35,529,995	34,809,865	34,809,865				100
	국고보조금	20,955,518		20,955,518	20,600,207	20,600,207				100
	시·도비 보조금	14,574,477		14,574,477	14,209,658	14,209,658				100
	지방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
소 계	25,168,617	117,800	25,286,417	30,292,631	25,840,495	4,452,136	29,700	4,422,436	85.3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13,535,937		13,535,937	13,624,367	13,548,035	76,333		76,333	99.4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49,691		649,691	950,121	846,854	103,267		103,267	89.1
	주차장	5,683,725		5,683,725	10,042,100	5,778,093	4,264,006	29,700	4,234,306	57.5
	주거환경 개선사업	894,045	34,033	928,078	1,123,481	1,114,951	8,530		8,530	99.2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4,352,105	83,767	4,435,872	4,509,448	4,509,448				1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3,114		43,114	43,114	43,114				10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D)	익년도 이월액 (E)	불용액 (C-D-E)
합계	118,196,856	11,389,656	129,586,512	111,423,582	105,762,001	9,984,369	13,840,142
소계	93,028,239	11,271,855	104,300,094	92,229,257	86,658,399	9,346,524	8,295,171
일반 회 계	구분청소관	86,848,326	11,153,593	98,001,919	86,083,155	80,512,297	8,143,098
	일반행정	19,887,573	472,623	20,360,196	18,673,082	18,673,082	1,412,191
	사회개발	50,754,781	8,295,903	59,050,684	55,642,153	50,468,203	1,413,621
	경제개발	10,086,877	2,995,345	13,082,222	10,801,025	10,404,117	775,364
	민방위	297,535		297,535	285,809	285,809	11,726
	자원및기타경비	5,821,560	△610,278	5,211,282	681,086	681,086	4,530,196
	동소관	6,179,913	118,262	6,298,175	6,146,102	6,146,102	152,073
소계	25,168,617	117,801	25,286,418	19,194,325	19,103,602	637,845	5,544,971
특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13,535,937		13,535,937	13,524,705	13,524,705	11,23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49,691		649,691	86,254	86,254	563,437
	주차장	5,693,725		5,693,725	775,897	775,897	4,917,828
	주거환경개선사업	894,045	34,033	928,078	586,455	520,932	396,140
	장립유수자살사업	4,352,105	83,768	4,435,873	4,198,722	4,173,522	241,7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3,114		43,114	22,292	22,292	20,822

3. 검토의견

가. 세입분야

- 2000년도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세입 예산현액이 1,295억 8,651만원이며 이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1,481억 9,6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7.9%인 1,302억 7,069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에 비해 2.36%증가 되었습니다.
-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부분인 지방세는 210억 4,982만원을 수납하여 86.9%이며 세외수입은 293억 3,968만원을 수납하여 74%로 전년도 대비 75%보다 다소 수납액이 저조한 편이며 지방교부세 16억 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348억 986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징수하였고 문화회관건립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징수율 89.1%로 전년 78.8%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99년 대비 57.5%의 징수율은 전년보다 약간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인 지방세부분이 23억 2,722만원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 일천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 전체 미수납액은 123억 9,1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51%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132억 6,343만원보다 8억 7,1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이 7,63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326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2억 3,430만원으로 징수율 57.5%로 전년보다 나아졌으며 결손처분은 2,970만원으로 전년보다 개선되었으나 특별회계의 결손처분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미납액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의료보호등 저소득층의 회수 불분명한 미수납은 결손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수납액 853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장림유수지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발전소주변 지역사업에는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나. 세출분야

- 2000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등 예산 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295억 8,651만원으로서 총 지출액 1,057억 6,2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99억 8,436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이 138억 4,014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2억 2,488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15억 6,392만원, 사회개발비 14억 1,395만원, 경제개발비 7억 7,536만원, 민방위비 1,172만원, 자원 및 기타 경비 45억 3,019만원이 불용액으로 각각 발생한 상태로서 그 가운데 명시 이월된 사업은 15건에 이월액 33억 2,861만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도로개설사업비 등이 대부분이며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사업비외 2건에 8억 7,664만원이 사고 이월 되었으며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비 51억 4,126만원이 공사지연으로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외 5개 특별회계 총불용액 67억 3,689만원중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3,83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0억 9,853만원으로 전년보다 13.8%가 증가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 일반회계 미수납액 처리중 불납 결손처분 총액이 10억 8,173만원으로 전년도 8억 2,160만원에 비해 31.66%가 늘어 났으며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분석결과 시효소멸이 6억 9,180만원 무재산 2억 7,295만원 공매시 배당무가 1억 1,697만원 등이 사유별, 순위별로 발생 전년도대비 시효소멸과 무재산 결손처분이 늘어난 것은 회수 불가능한 체납 정리 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사유발생으로 결손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 신속한 행정처리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 수납액중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도 3억 49만원보다 배이상 늘어난 8억 4,968만원이었으나 지방세중 종합토지세 3건에 5억 6,484만원을 환급하는 등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대부분이고 환급사유는 부과착오 및 이중납부 등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정산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 변상금 과태료 수입의 환급등은 지방세나 구세수입 부과 결정시 신중을 기한다면 과오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집행치 않은 전액 불용액은 7건 1억 3,942만원으로 전년도 4억 9,292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천만원 이상 불용은 29건 19억 6,708만원으로 이중 2차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인건비 2억 5,000만원 (총예산 72억 8,588만원)등은 당해 예산 불용액이 2억 3,789만원으로 2차 추경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하였어야 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치 못하는 각종 사업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지, 과다책정여부 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예산전용·예산이체 등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현안의 0.1%인 8건에 1억 158만원으로 전년 8건 1,634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용역비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치 않고 전용한 사례는 전용제도를 남용한 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예산이체는 해당 없었습니다.
- 계속비 집행에 있어 서부산문화회관건립비는 1995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금년에 발행된 10억원의 지방채 이자부담 등이 낭비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획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되어야겠으며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은 예산액 6억 4,969만원 지출액 8,62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3%만 활용되고 5억 6,344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보증문제 등 법규상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생활안정 기금을 필요로 한 많은 구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금활용방안을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가 부실하다는 결산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인 을숙도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재산 현황누락과 재산매각대장과 징수부와의 매각수의 차이 발생등 매년 유사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라. 종합의견

- 향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각 부서별 결산검산서상에 나타난 바람직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보완하고 세입예산의 추계자료를 충분하게 분석·확인하여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 기타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